

작은도서관을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지난 9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별표 2]의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 중 비고 2번 항에서 사립작은도서관을 제외하였다. 또한, 「도서관법」 제36조 ③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으로 작은도서관의 등록에 대해 모호하게 언급하고 있다.

당장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사립에 해당되어 설치 시 시설 및 자료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이 발생된다.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전부개정 당시 공청회는 생략됐고,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의견 청취는 없었다.

전국의 7천여개 작은도서관중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작은도서관의 존재를 부정하고,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사립작은도서관의 지위 하락은, 작은도서관 전체의 위축 및 소멸로 이어질 것이다. 운영 중인 기존 도서관도 국공립, 사립의 구분이 없어지면 운영이 위축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민간 주도의 작은도서관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사례이다. 생활밀착형 사립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하여 국민의 독서문화증진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사립작은도서관을 전면부정하는 것과 같다.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작은도서관의 역사와 피땀으로 지속해온 현장을 부정하는 것이며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의 힘을 차단하려는 매우 위험한 처사이다.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를 키우며 책임지는 시민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소수일 것이나 그 힘은 강력하다. 작은도서관은 독서생태계의 혈맥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싹틔줄같은 연결망이다.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고,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온 사립작은도서관 존재를 부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1세 어린이만 작은도서관협회  사단법인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사)광주광역시 작은도서관협의회, (사)광주시민센터, (사)방정환연구소, (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 (사)작은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재)도서관문화재단 씨앗, (재)책임있는사회문화재단, 강동작은도서관협의회, 경기광주작은도서관협의회, 경북예천군 작은도서관협의회, 고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 광명시작은도서관협의회, 구리시작은도서관협의회, 군포시작은도서관협의회, 늘푸른 풍림마을 풍두레, 대전마을작은도서관협회, 두근두근그림책연구소, 도서관을사랑하는책마루동무들, 동네책방 네트워크, 마포작은도서관협의회, 문화기획협동조합 별책부록, 민들레연극마을, 부산남구작은도서관협의회, 부천시작은도서관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생각처럼, 성남시작은도서관협의회,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수원시작은도서관협의회, 안산시작은도서관협의회, 안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 양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어린이문화연대,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용인시작은도서관협의회, 울주군작은도서관협의회, 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 울산작은도서관협회, 웃는책사회적협동조합, 의왕시작은도서관협의회, 의정부작은도서관협의회, 익산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서구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전북작은도서관협의회, 전주시사립작은도서관협의회, 책과도서관, 책마을해리, 천안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청주작은도서관협의회, 파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평택시작은도서관협의회, 하남시작은도서관협의회,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화성시작은도서관협의회 (가나다 순)